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2200124)	2024. 6. 0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4.9.02.) 상정 제429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20.) 상정, 심사
	주호영의원 (2207174)	2024. 12. 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7.01.) 제429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20.) 상정,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2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제공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 등).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 각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 또는”을 “성폭력범죄,”로, “성범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61조제1호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라목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결격사유)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성폭력범죄,----------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1조(당연퇴직) ----------.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	1. ----------. ----------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2. (생 략)	2. (현행과 같음)